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99
----------	-------

발의연월일 : 2025. 9. 23.

발 의 자 : 한창민 · 백선희 · 용혜인
윤종오 · 손 술 · 김선민
전종덕 · 김재원 · 정혜경
최혁진 · 김종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집단소송을 증권분야에 한정하고 있고 소송절차 역시 집단소송 허가 재판을 거친 후 본안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 법 도입 당시 남소와 기업 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로 적용대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에 국한하고 있음.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 남소와 기업 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로 적용대상을 제한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남소 우려가 기우였음이 드러남.

최근 홍콩 H지수 연계 파생결합증권(ELS) 손실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은행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 구조 이해 부족, 내부통제 미비, 과도한 수익 중심 영업관행으로 불완전판매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는 여

전히 미흡한 상황이고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에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금융거래 피해에 대한 집단적 구제가 불가능하고, 허가 절차와 본안 절차가 이원화되고 소송허가제 결정으로 3심, 본안 판단에 3심 등 사실상 6심제로 진행되어 소송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제명을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변경하고,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증권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송으로 확대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장하고 집단소송 허가 재판은 민사소송법의 중간 판결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개정하여 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소비자 피해의 신속·공정한 구제,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리 실현, 그리고 기업의 불법행위 예방 효과를 높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명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변경함.

나. “금융거래”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금융소비자”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한다고 정의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다. 법원은 금융소비자집단소송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하도록 하

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재판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2항).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증권의”를 “금융상품의”로,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금융소비자집단소송”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증권관련집단소송”을 “금융소비자집단소송”으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를 “금융거래과정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를 “금융거래과정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증권관련집단소송”을 “금융소비자집단소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증권관련집단소송”을 “금융소비자집단소송”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거래”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를 말한다.

7. “금융소비자”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訴)는 다음

각 호의”를 “금융소비자집단소송은 금융거래의 과정에서 발생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 중 “증권관련집단소송”을 “금융소비자집단소송”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증권관련집단소송”을 “금융소비자집단소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이 된 증권을 소유하거나, 그 증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이”를 “이”로, “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자는 금융소비자집단소송”으로 한다.

제6조 중 “증권관련집단소송”을 “금융소비자집단소송”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를 “소의 제기”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을 “(소의 제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증권관련집단소송”을 “금융소비자집단소송”으로 하며, “소장(訴狀)과 소송허가신청서를”을 “소장(訴狀)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증권관련집단소송”을 “금융소비자집단소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증권관련집단소송”을 “금융소비자집단소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경력

7. 허가 신청의 취지와 원인

8. 변호사 보수(報酬)에 관한 약정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금융소비자집단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소송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해당 금융소비자집단소송과 관련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최근 3년간 대표당사자로 관여한 금융소비자집단소송의 내역

③ 소장에는 소송대리인이 최근 3년간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한 금융소비자집단소송의 내역에 관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을 “소장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증권관련집단소송”을 “금융소비자집단소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증권관련집단소송”을 “금융소비자집단소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관련집단소송”을 “금융소비자집단소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증권관련집단소송”을 각각 “금융소비자집단소송”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소송허가 요건)”을 “(소송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관련집단소송”을 “금융소비자집단소송”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

시를 기준으로 그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을 “이상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조제1항 각 호”를 “제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관련집단소송”을 “금융소비자집단소송”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소송허가신청서”를 “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관련집단소송”을 “금융소비자집단소송”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소송허가 절차)”를 “(소송요건에 대한 중간판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원은 금융소비자집단소송의 소가 적법한지에 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한다.
- ②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재판한다.

제14조의 제목 “(소송허가 신청이 경합된 경우의 처리)”를 “(병합심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신청서가”를 “금융소비자집단소송의 소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신청서가”를 “금융소비자집단소송의 소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증권관련집단소송”을 “금융소비자집단소송”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소송허가 결정)”을 “(중간판결의 기재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서”를 “금융소비자집단소송의 소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중간판결의 판결서”로 하고, “결정”을 “중간판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6조 중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 결정”을 “금융소비자집단소송의 소가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그 취지의 중간판결”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집단소송 허가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중간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소송허가 결정”을 “중간판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 결정이 확정되면”을 “금융소비자집단소송의 소가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하면”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증권관련집단소송”을 “금융소비자집단소송”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증권관련집단소송”을 “금융소비자집단소송”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중 “증권관련집단소송”을 “금융소비자집단소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피고를 심문(審問)하여 결정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제13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증권관련집단소송”을 “금융소비자집단소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증권관련집단소송”을 “금융소비자집단소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증권관련집단소송”을 “금융소비자집단소송”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중 “증권관련집단소송”을 “금융소비자집단소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증권관련집단소송”을 “금융소비자집단소송”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관련집단소송”을 “금융소비자집단소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소비자집단소송이 각하된 경우

제34조제1항 중 “손해배상액”을 “손해배상의 범위 및 손해배상액”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증권관련집단소송”을 “금융소비자집단소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증권관련집단소송”을 “금융소비자집단소송”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관련집단소송”을 “금융소비자집단소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관련집단소송”을 “금융소비자집단소송”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증권관련집단소송”을 “금융소비자집단소송”으로 한

다.

제63조제1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증권관련 집단소송법</u>	<u>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u>
제1조(목적) 이 법은 <u>증권의</u>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u>기업의 경영투명성</u> 을 높이기 위하여 <u>증권관련집단소송</u> 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금융상품</u> 의----- ----- ----- <u>금융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u> ----- <u>금융소비자</u> <u>집단소송</u>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u>증권관련집단소송</u> ”이란 <u>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 과정에서</u>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1. -- <u>금융소비자집단소송</u> ----- <u>금융거래과정에서</u> ----- ----- ----- ----- -----.
2. “총원”(總員)이란 <u>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u>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보전(補填)에 관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	2. ----- <u>금융거래</u> <u>과정에서</u> ----- ----- ----- -----

지는 피해자 전원을 말한다.

3. (생략)

4. “대표당사자”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원을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 절차를 수행하는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을 말한다.

5. “제외신고”(除外申告)란 구성원이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기판력(既判力)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6.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신설>

제3조(적용 범위) 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訴)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

3. (현행과 같음)

4. -----
-----금융
소비자집단소송-----

-----.

5. -----
-----금융소비자집단
소송-----

-----.

6. “금융거래”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를 말한다.

7. “금융소비자”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금융소비자집단소송은 금융거래의 과정에서 발생한-----
-----.

<삭제>

<u>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u>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제161조 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경 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손해 배상청구	<삭 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제177 조 또는 제179조에 따른 손해 배상청구	<삭 제>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 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삭 제>
제4조(관할) 증권관련집단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 다.	제4조(관할) 금융소비자집단소송 ----- ----- ----- -----.
제5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중	제5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금

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와 피고
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이
된 증권을 소유하거나, 그 증권
과 관련된 직접적인 금전적 이
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소송절차에서 소송
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총원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
즉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중
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
다.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제7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
청) ①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
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訴狀)과 소
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장에

금융소비자집단소송-----

-----.

② 이-----

자는 금융소비자집단소송----
-----.

제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금
용소비자집단소송-----

-----.

제2장 소의 제기

제7조(소의 제기) ① -----

-----금융소비자집단소송----
-----소장(訴狀)을----

-----.

② 금융소비자집단소송-----

붙이는 인지액(印紙額)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에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

③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항소심(抗訴審) 및 상고심(上告審)에서의 인지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를 준용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된 사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거래소는 그 사실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제8조(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 5. (생략)

-----.

③ 금융소비자집단소송-----

-----.

<삭 제>

제8조(소장의 기재사항) ① ----

-----.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6.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경력</u>
<u><신 설></u>	<u>7. 허가 신청의 취지와 원인</u>
<u><신 설></u>	<u>8. 변호사 보수(報酬)에 관한 약정</u>
<u><신 설></u>	<u>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u>
<u><신 설></u>	<u>1. 해당 금융소비자집단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소송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해당 금융소비자집단소송과 관련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u>
<u><신 설></u>	<u>2. 최근 3년간 대표당사자로 참여한 금융소비자집단소송의 내역</u>
<u><신 설></u>	<u>③ 소장은 소송대리인이 최근 3년간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금융소비자집단소송의 내역에 관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u>
<u>제9조(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소송허가</u>	<u><삭 제></u>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총원의 범위

5.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경력

6. 허가 신청의 취지와 원인

7. 변호사 보수(報酬)에 관한 약정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송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소송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된 증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최근 3년간 대표당사자로 관여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내역

③ 소송허가신청서에는 소송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내역

2. 제5조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
한다는 사실

제10조(소 제기의 공고 및 대표
당사자의 선임) ① 법원은 제7
조에 따른 소장 및 소송허가신
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
고하여야 한다.

1.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
기되었다는 사실

2. ~ 4.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대표당
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
은 경력과 신청의 취지를 적은
신청서에 제9조제2항의 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10조(소 제기의 공고 및 대표
당사자의 선임) ① -----

-----소장을-----

-----.

1. 금융소비자집단소송-----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8조-----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① 대표당사자는 구성원 중 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한다.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소송허가 요건) ①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① -----

-----금융소비자 집단소송-----

② 금융소비자집단소송-----

③ -----금융소비자집단소송-----

-----금융소비자집단소송-----

제12조(소송요건) ① 금융소비자 집단소송-----

1. <u>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u> 2. <u>제3조제1항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u> 3. <u>증권관련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u> 4. <u>제9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을 것</u> ② <u>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提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u> <u>제13조(소송허가 절차) ① 대표당사자는 소송허가 신청의 이유를 소명(疎明)하여야 한다.</u>	1. -----<u>이상일</u>----- 2. <u>제3조제1항</u>----- ----- ----- ----- 3. <u>금융소비자집단소송</u>----- ----- ----- 4. <u>제8조</u>-----<u>소장</u>----- ----- ----- ② <u>금융소비자집단소송</u>----- ----- ----- ----- -----. <u>제13조(소송요건에 대한 중간판결) ① 법원은 금융소비자집단소송의 소가 적법한지에 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u>
--	---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은 제7조제1
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피고를 심문(審問)하여 결정으
로 한다.

③ (생략)

제14조(소송허가 신청이 경합된
경우의 처리) ① 동일한 분쟁
에 관하여 여러 개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소송허가신청서가
동일한 법원에 제출된 경우 법
원은 이를 병합심리(併合審理)
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분쟁에 관한 여러
개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
허가신청서가 각각 다른 법원
에 제출된 경우 관계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
은 관계 법원이나 제7조제1항
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대
표당사자 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심리할
법원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증
권관련집단소송을 심리할 법원

시행한다.

②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재판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병합심리) ① -----

-----금융소비
자집단소송의 소장이-----

-----.

② -----
-----금융소비자집단소송의
소장이-----

-----.

③ -----금
용소비자집단소송-----

으로 결정된 법원은 이를 병합
심리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15조(소송허가 결정) ① 법원은
제3조·제11조 및 제12조의 요
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결정으
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한
다.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
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결정을 한 법원이 기명날
인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③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
를 조정(調整)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即時抗告)할
수 있다.

제16조(소송비용의 예납) 법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
결정을 할 때에는 고지·공고
· 감정(鑑定) 등에 필요한 비용
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중간판결의 기재사항 등)

① <삭 제>

② 금융소비자집단소송의 소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중간판결의
판결서-----
----중간판결-----.

1. ~ 10.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16조(소송비용의 예납) -----
금융소비자집단소송의 소가 적
법하다고 인정하여 그 취지의
중간판결-----

-----.

제17조(소송불허가 결정) ① 대표
당사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
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허가 결정
이 확정된 때에는 증권관련집
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
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소송허가 결정의 고지) ①
법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
송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
성원에 대하여는 증권관련집
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효
력이 미친다는 사실
9.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
성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계속(繫屬) 중에 법원의 허가
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10. · 11. (생략)
- ② · ③ (생략)

제19조(소송허가 결정의 통보) ①

제17조(준용규정)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집단소송 허
가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중간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제18조(중간판결의 고지) ① ---
-----금융소비자집단소송의
소가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하면-----
-----.

1. ~ 7. (현행과 같음)
 8. -----
-----금융소비자집
단소송-----

 9. -----
-----금융소비자집단소송

 10. · 11.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
- <삭 제>

법원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거래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정거래소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제21조(대표당사자에 관한 허가)

① 구성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계속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생략)

제22조(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① (생략)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생략)

제21조(대표당사자에 관한 허가)

① -----금융소비자집단소송-----

-----.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자와 피고를 심문(審問)하여 결정으로 한다.

③ -----제13조제3항-----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2조(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3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 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④ (생략)

⑤ 제3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단 후 1년 이내에 수계 신청이 없는 때에는 그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28조(제외신고)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제외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자는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외신고 기간 내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①

금융소비자집단소송-----

-----.

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소비자집단소송-----

-----.

④ (현행과 같음)

⑤ -----

-----금융소비자

집단소송-----.

제28조(제외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금융소비자

집단소송-----

-----.

-----.

③ <u>증권관련집단소송</u>의 피고는 제2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기된 소에 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9조(시효중단의 효력) <u>증권관련집단소송</u>의 소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청구에 관하여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 소멸한다. 1. 제17조에 따라 소송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2. 3. (생략) 제34조(손해배상액의 산정) ① <u>손해배상액</u>의 산정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생략) 제35조(소 취하, 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 ① <u>증권관련집단소송</u>의 경우 소의 취하, 소송상	③ <u>금융소비자집단소송</u>----- ----- -----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시효중단의 효력) <u>금융소비자집단소송</u>----- ----- ----- ----- ----- -----. 1. <u>금융소비자집단소송</u>이 각하된 경우 2. 3. (현행과 같음) 제34조(손해배상액의 산정) ① <u>손해배상의 범위 및 손해배상액</u>----- ----- ----- -----.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소 취하, 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 ① <u>금융소비자집단소송</u>-----
---	--

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② · ③ (생략)

④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는 「민사소송법」 제26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배임수재) ① 제7조제1항
에 따라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
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
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한다.

1. ~ 3. (생략)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증권관
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
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
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
고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
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소비자집단소송-----

-----.

제60조(배임수재) ① -----
-----금융소비자집단소송

-----.

1. ~ 3. (현행과 같음)

② -----금융소
비자집단소송-----

약속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생략) 제61조(배임증재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u>증권관련집단소송</u>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한 자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제6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u>제9조제1항제4호</u>의 내용을 거짓으로 적은 자 2. <u>제9조제2항</u> 또는 제3항의 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첨부한 자 3. (생략)	----- -----. ③ (현행과 같음) 제61조(배임증재 등) ① ----- -----<u>금융소비자집단소송</u>-----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u>제8조</u>----- ----- 2. <u>제8조</u>----- ----- ----- 3. (현행과 같음)
---	--